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5. 2. 24 .

발 의 자 : 이종걸 의원

찬 성 자 : 이종걸 · 신정훈 · 추미애
김영록 · 장병완 · 유인태
조정식 · 강창일 · 김관영
백재현 · 김성곤 · 신경민
문병호 의원 (13인)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접근매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기술적 유형 역시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로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접근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농협은행 인출사고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전자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상 정의된 접근매체 이외에도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자금융사고는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고 현행 법령에 금융회사가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과실책임의 대상을 사고의 기술적 유형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 상 금융회사 등의 면책사유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첨단·고도화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면책사유 및 범위를 법령으로 사전에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입법론 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취지와 달리,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이 확대해석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배상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 상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가 통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 보호되는데 반해, 해외의 주요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이용자가 적시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면 통지 이전에 발생한 손해도 일부 또는 전부 금융회사 등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의 금융회사 등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선진 금융보안 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이고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용자가 일정 기간 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등이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에 분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 통지 전의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다만 이용자의 통지 시점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규율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사이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무권한거래’ 및 ‘접근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함(안 제2조 제23호 및 제24호 신설)

나.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1항, 제51조제3항제1호)

다.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함(안 제9조제1항).

라.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월 이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식한 이용자가 통지를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함(안 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무권한거래”란 이용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지시로 인하여 개시된 거래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24. “접근도구”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또는 접근매체나 다른 접근도구와 결합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는 제외한다)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하고 거래 후 1월 이내에 거래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무권한 거래”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무권한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날부터 2월(이하 “이의제기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거래내용에 기재된 무권한거래에 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무권한거래(이의제기기간 이내에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제9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3항 중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를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을 “(이용자의 통지 및 금융회사 등의 일부면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에 분실이나 도난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 제3항”으로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통지 없이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음에도 무권한거래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가 무권한거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권한거래 총액을 그 한도로 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안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5만원
2.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안 날로부터 2영업일 도과 후, 이의제기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50만원
3.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알고, 통지하지 않거나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다음 각 목의 합
 - 가. 50만원
 - 나.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발생한 무권한거래 총액

③ 이용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 사유를 입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의제기기간 또는 제2항 각 호 규정에 따른

통지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를 “거래내용을 제공하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내용 제공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1. ~ 22. (현행과 같음) <u>23. “무권한거래”란 이용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지시로 인하여 개시된 거래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u>
<u><신설></u>	<u>24. “접근도구”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또는 접근매체나 다른 접근도구와 결합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는 제외한다)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u>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 ----- ----- -----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후단 신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하고 거래 후 1월 이내에 거래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
----- 무권한거래-----

--.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무권한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삭제>

<삭제>

<삭제>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② -----

-----.

1. 이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2월(이하 “이의제기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거래내용에 기재된 무권한거래에 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무권한거래(이의제기기간 이내에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신 설>

2. (생 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④ (생략)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체결한 경우

2.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현행 제2호과 같음)

③ -----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자의 통지 및 금융회사 등의 일부면책)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에 분실이나 도난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통지 없이는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음에도 무권한거래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가 무권한거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권한거래 총액을 그 한도로 한다.

<신 설>

1.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안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5만원

<신 설>

2.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안 날로부터 2영업일 도과 후, 이의제기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50만원

<신 설>

3.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알고, 통지하지 않거나 이의제

<신 설>

②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51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

기기간 도과 후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다음 각 목의 합가. 50만원

나. 이의제기기간 도과 후 발생한 무권한거래 총액

③ 이용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 사유를 입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의제기기간 또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3항 -----

-----.

제5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p>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u></p> <p>2. ~ 12. (생략)</p> <p>④ (생략)</p>	<p>-----.</p> <p>1. <u>제7조제1항 및 제2항</u>----- <u>---거래내용을 제공하지---</u> -----</p> <p>2. ~ 1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